

# (주)머스트자산운용 투자권유준칙

제 정	2013.07.01.
1차개정	2016.10.06.
2차개정	2019.08.22.
3차개정	2020.04.02.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하 "임직원등"이라 한다)이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제3조 제1호 및 제4조, 제5조, 제13조 제1항, 제18조 및 제21조는 전문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할 때에도 적용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관리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 2) "파생상품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 가. 파생상품
  - 나. 법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
- 3) '취약한 금융소지자'란 고령자(65세 이상), 은퇴자, 주부 등 금융취약계층을 말한다.

**제3조(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 원칙)**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임직원등은 관계법령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 3) 임직원등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 4) 임직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회사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장 투자자 구분 등

**제4조(방문 목적 확인)**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 방문시 투자자의 방문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일반·전문투자자의 구분)**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 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등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 제3장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6조(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6조 제2항(투자자정보 파악) 및 제3항(적합성원칙)에 따른 의무를 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의사를 투자자로부터 서면 또는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자가 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 전에 해당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법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투자자는 제외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투자설명서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 투자설명서 교부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제4장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 제1절 투자자정보

**제7조(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①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성향, 재무상태,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수준, 연령, 금융상품 구매목적, 구매경험 등의 투자자정보를 [별지 제1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스코어링기준표 [표 제1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성향(이하 "투자자성향"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등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정보 작

성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등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일반투자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 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그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⑤ 임직원등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로 간주하고 “제3장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절차를 따른다.

⑥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취약한 금융소비자인지 여부에 관한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거부의사를 [별지 제1호] ‘일반투자자 정보 확인서’ 를 이용하여 확인 받아야 하고,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상 강화된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의 적용이 배제됨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24개월(투자자정보 유효기간)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제1항을 설명하고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알린 후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투자자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회신해 줄 것을 투자자에게 통지(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 등)하여야 한다.(2020.04.02 개정)

## 제2절 투자권유

**제9조(투자권유 절차)** ① 임직원등은 회사가 정한 [별표1]의 적합성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보유 자산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으로 투자하거나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등 해당 투자를 통하여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낮추거나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④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 및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을 알리고 해당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고지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 받아야 한다.

⑤ 특히, 취약한 금융소비자(65세 이상 고령층, 은퇴자, 주부 등)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의 불이익사항을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반드시 그 이해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⑥ 투자자가 취약한 금융소비자인지 여부에 관한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 규정]상 강화된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의 적용이 배제됨을 알리고 해당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고지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 받아야 한다.

**제10조(투자권유시 유의사항)** ①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다.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증권과 장내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각 행위는 제외한다.

(1)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2)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3)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경우 다음의 각 금융투자상품 및 계약의 종류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금융투자상품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나)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① 증권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②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③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다) 신탁계약

① 법 제103조제1항제1호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② 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마. 투자자(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를 받아 투자를 한 경험이 있는 일반투자자는 제외한다)로부터 금전의 대여나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요청 받지 아니하고 이를 조건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바. 관계법령등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성향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장기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 제3절 설명의무

**제11조(설명 의무)**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②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투자자의 투자경험과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지식수준 등 투자자의 이해수준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③ 임직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

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임직원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가. 투자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나.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경우 법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판매 전에 교부하는 경우

⑤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제12조(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 및 투자대상 자산별 투자비율

나.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시장상황 등의 특징

다.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환위험 헤지 여부 및 목표 환위험 헤지 비율

라.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마.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환위험 헤지를 하는 자펀드와 환위험 헤지를 하지 않는 자펀드간의 판매비율 조절을 통하여 환위험 헤지비율을 달리(예 : 20%, 40%, 60%)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

② 임직원등은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투자자를 상대로 예상수익률의 보장, 예상수익률의 확정적인 단언 또는 이를 암시하는 표현, 실적배당상품의 본질에 반하는 주장이나 설명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장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제13조(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① 회사는 다음의 요소들을 감안하여 각 금융투자상품별 위험도를 [별표 2]와 같이 분류하며,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는 다른 금융투자상품과 별도로 기준을 정한다.

가. 정량적 요소 : 과거 가격의 변동성, 원금손실가능범위, 기초자산의 종류 및 구성 비중, 신용등급, 만기, 레버리지 정도 및 금융투자상품의 목표 투자기간 등

나. 정성적 요소 : 상품구조의 복잡성, 거래상대방위험, 조기상환가능성 및 유동성 등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분류하는 경우 장내파생상품은 다른 금융투자상품(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다.) 보다 높은 위험도로 분류한다.

③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를 하는 경우 외부기관이 작성한 위험도 평가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④ 임직원등은 포트폴리오투자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개별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투자금액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포트폴리오 위험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트폴리오의 구성, 운용전략 및 위험

도 책정 등을 회사의 전문조직에서 결정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한다.

## 제6장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제14조(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 ① 임직원은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투자자가 계약서류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나. 투자자가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받을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로서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② 임직원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를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투자자문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임직원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03호 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나.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다.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라.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제16조(투자자문계약 및 투자일임계약 유의사항)**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확인 받아야 한다.

가.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

나.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다.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

라.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

마.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사.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투자일임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아.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자. 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차.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카.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대상 기간

타. 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파. 그 밖에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각 호의 사항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내용은 제1항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 가. 제1항의 각 호의 사항
- 나.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 다.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 라.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 마. 투자일임재산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제17조(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금지행위)** 임직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아래의 가목 및 나목의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 가. 투자자로부터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 나. 투자자에게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 증권 그 밖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 다.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제18조(투자일임에 대한 특칙)** 투자일임의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또는 우선하여 적용한다.

- 1) 임직원등은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투자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소득수준 및 금융자산의 비중 등의 정보를 [별지 제1호]의 투자자정보확인서에 따라 파악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2) 임직원등은 1)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표1]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유형(이하 "투자자유형"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3) 회사는 하나 이상의 자산배분유형군을 마련하여야 하며, 하나의 자산배분유형군은 둘 이상의 세부자산배분유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 4) 회사는 1)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에 적합한 세부자산배분유형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5) 임직원등은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 체결 전에 투자자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 가. 세부자산배분유형간 구분 기준, 차이점 및 예상 위험수준에 관한 사항
  - 나. 분산투자규정이 없을 수 있어 수익률의 변동성이 집합투자기구 등에 비해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
  - 다.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성과보수 수취요건 및 성과보수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잠재 위험에 관한 사항

**부칙(2013.07.01.)**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0.06.)**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16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08.22.)**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19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04.02.)**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20년 4월 02일부터 시행한다.(금융투자업규정 변경에 따름)

[별지 1호]

## 일반투자자 투자자정보 확인서

- 본 확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드리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고객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제공한 경우에는 적합한 투자권유가 이루어 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고객의 투자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취약한 금융소비자(65세 이상 고령층, 은퇴자, 주부 등) 인지 여부에 관한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상 강화된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 본 확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제①항에 따라 고객이 파생상품등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개인)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

아래의 질문에 대하여 고객님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하 여주시기 바랍니다.

1. 고객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19세 이하    ② 20세 이상 ~ 30세 미만    ③ 30세 이상 ~ 40세 미만
- ④ 40세 이상 ~ 50세 미만    ⑤ 50세 이상 ~ 60세 미만    ⑥ 60세 이상

2. 다음 상품 중 투자 경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선택해주시시오.(복수선택가능)

- ① 은행 예금/적금, CMA, 국채, 지방채, MMF 등
- ② 채권형펀드, 원금보장형 ELS,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등
- ③ 혼합형펀드, 원금의 일부만 보장되는 ELS, 신용도 중간 등급의 회사채 등
- ④ 주식, 주식형펀드,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ELS,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등
- ⑤ 주식신용거래, 선물, 옵션, 파생상품펀드, ELW 등

3. 만일 파생상품,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펀드에 투자한 경험이 있으시면, 투자 경험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투자기간 ( 년 개월)

4.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은 금융자산(부동산 등 제외)대비 얼마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 ① 10% 이내    ② 10% 이상 ~ 20% 미만
- ③ 20% 이상 ~ 30% 미만    ④ 30% 이상 ~ 50% 미만    ⑤ 50% 이상

5. 향후의 고객님의 수입원에 대한 예상 중 가장 가까운 설명은 무엇입니까?

- ①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연금이 주 수입원이다.
- ②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으나, 향후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③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 ④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6. 현재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의 투자 예정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2년 미만
- ③ 2년 이상 3년 미만    ④ 3년 이상    ⑤ 특별한 계획 없음

7. 투자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설명은 무엇입니까?

- ① 기존 보유자산에 대한 위험 헤지 목적
- ② 채권이자, 주식배당 정도의 수익 실현 목적
- ③ 시장(예:KOSPI지수) 가격 변동 추이와 비슷한 수준의 수익 실현
- ④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 실현 목적
- ⑤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을 원하며,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위험도 감내 가능

8. 고객님의 감내할 수 있는 손실의 수준은 어느 정도십니까?

- ①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 원금은 보전되어야 한다.
- ② 투자 원금에서 최소한의 손실(10% 미만)만을 감수할 수 있다.





## (법인)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

아래의 질문에 대하여 귀사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사의 법인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금융업    ② 금융업 이외 상장법인    ③ 금융업 이외 비상장법인    ④ 비영리법인

2. 다음 상품 중 투자 경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선택해주시요. (복수선택가능)

- ① 은행 예금/적금, CMA, 국채, 지방채, MMF 등  
② 채권형펀드, 원금보장형 ELS,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등  
③ 혼합형펀드, 원금의 일부만 보장되는 ELS, 신용도 중간 등급의 회사채 등  
④ 주식, 주식형펀드,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ELS,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등  
⑤ 주식신용거래, 선물, 옵션, 파생상품펀드, ELW 등

3. 만일 파생상품,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펀드에 투자한 경험이 있으시면, 투자 경험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투자기간 ( 년 개월)

4.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은 금융자산(부동산 등 제외)대비 얼마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 ① 10% 이내    ② 10% 이상 ~ 20% 미만  
③ 20% 이상 ~ 30% 미만    ④ 30% 이상 ~ 50% 미만    ⑤ 50% 이상

5. 총 자산(순자산)의 규모는 얼마나 되십니까?

- ① 30 억 미만    ② 30 억 이상 ~ 50 억 미만  
③ 50 억 이상 ~ 100 억 미만    ④ 100 억 이상

6. 현재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의 투자 예정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① 1 년 미만    ② 1 년 이상 2 년 미만  
③ 2 년 이상 3 년 미만    ④ 3 년 이상    ⑤ 특별한 계획 없음

7. 투자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설명은 무엇입니까?

- ① 기존 보유자산에 대한 위험 헤지 목적  
② 채권이자, 주식배당 정도의 수익 실현 목적  
③ 시장(예:KOSPI 지수) 가격 변동 추이와 비슷한 수준의 수익 실현  
④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 실현 목적  
⑤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을 원하며,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위험도 감내 가능

8. 고객님의 감내할 수 있는 손실의 수준은 어느 정도십니까?

- ①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 원금은 보전되어야 한다.  
② 투자 원금에서 최소한의 손실(10% 미만)만을 감수할 수 있다.  
③ 투자 원금 중 일부의 손실(20% 미만)을 감수할 수 있다.  
④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는다.





[표 1]

(개인)투자자 성향 분석 방법

[별지 1 호]의 투자자 정보확인서의 각 문항에 대한 답변 별 점수는 아래 표와 같다.

문항내용	응답번호별 배점	문항내용	응답번호별 배점
1. 연령	① - 6 점 ② - 10 점 ③ - 8 점 ④ - 6 점 ⑤ - 4 점 ⑥ - 2 점	5. 수입원에 대한 예상	① - 2 점 ② - 4 점 ③ - 6 점 ④ - 8 점
2. 투자경험	① - 2 점 ② - 4 점 ③ - 6 점 ④ - 8 점 ⑤ - 10 점	6. 투자예정 기간	① - 3 점 ② - 6 점 ③ - 9 점 ④ - 12 점 ⑤ - 3 점
3. 파생상품투자경험	유(①) - 5 점 무(②) - 0 점	7. 투자목적	① - 4 점 ② - 8 점 ③ - 12 점 ④ - 16 점 ⑤ - 20 점
4. 투자금액의 금융자산 대비 비중	① - 15 점 ② - 12 점 ③ - 9 점 ④ - 6 점 ⑤ - 3 점	8. 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	① - 4 점 ② - 8 점 ③ - 12 점 ④ - 20 점

※위의 표에 따라 채점 후, 각 문항별 점수의 총합으로 다음과 같이 투자자의 성향을 분류한다.

■ 투자자 성향 분류

총점 범위	집합투자상품 투자자유형	투자일임계약 투자자유형
90 점 이상 100 점 이하	공격투자형	고위험
80 점 이상 90 점 미만		중위험
70 점 이상 80 점 미만	적극투자형	위험
60 점 이상 70 점 미만		주의
40 점 이상 60 점 미만	위험수익중립형	
20 점 이상 40 점 미만	안정추구형	
0 점 이상 20 점 미만	안정형	

## (법인)투자자 성향 분석 방법

[별지 1 호]의 투자자 정보확인서의 각 문항에 대한 답변 별 점수는 아래 표와 같다.

문항내용	응답번호별 배점	문항내용	응답번호별 배점
1. 연령	① - 10 점 ② - 8 점 ③ - 6 점 ④ - 2 점	5. 수입원에 대한 예상	① - 2 점 ② - 4 점 ③ - 6 점 ④ - 8 점
2. 투자경험	① - 2 점 ② - 4 점 ③ - 6 점 ④ - 8 점 ⑤ - 10 점	6. 투자예정 기간	① - 3 점 ② - 6 점 ③ - 9 점 ④ - 12 점 ⑤ - 3 점
3. 파생상품투자경험	유(①) - 5 점 무(②) - 0 점	7. 투자목적	① - 4 점 ② - 8 점 ③ - 12 점 ④ - 16 점 ⑤ - 20 점
4. 투자금액의 금융자산 대비 비중	① - 15 점 ② - 12 점 ③ - 9 점 ④ - 6 점 ⑤ - 3 점	8. 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	① - 4 점 ② - 8 점 ③ - 12 점 ④ - 20 점

※위의 표에 따라 채점 후, 각 문항별 점수의 총합으로 다음과 같이 투자자의 성향을 분류한다.

### ■ 투자자 성향 분류

총점 범위	집합투자상품 투자자유형	투자일임계약 투자자유형
90 점 이상 100 점 이하	공격투자형	고위험
80 점 이상 90 점 미만		중위험
70 점 이상 80 점 미만	적극투자형	위험
60 점 이상 70 점 미만		주의
40 점 이상 60 점 미만	위험수익중립형	
20 점 이상 40 점 미만	안정추구형	
0 점 이상 20 점 미만	안정형	

##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 기준

### ■ 집합투자상품 위험도 분류 기준

등급	국내투자 신규펀드 등급 분류기준
<b>1 등급</b> (매우 높은 위험)	①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b>2 등급</b> (높은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b>3 등급</b> (다소 높은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b>4 등급</b> (보통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b>5 등급</b> (낮은 위험)	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b>6 등급</b> (매우 낮은 위험)	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②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주 1)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당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인 머스트자산운용의 내부기준입니다. 따라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 2) "고위험자산"이란 주식, 국내·외 부동산, 상품(Commodity), 리츠,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지분(유한회사, 합자회사, 조합 등), 부담부부 대출 및 대출채권, 이러한 고위험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 주 3) 투기등급채권 등이란 투기등급채권(BB+ 이하), 투기등급 CP(B+이하), 이러한 투기등급채권 등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 주 4) "중위험자산"이란 채권(BBB-등급 이상), CP(A3 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투자원금에 대해 정부의 신용보강이 있는 부동산 또는 특별자산, 이러한 중위험 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 주 5) "저위험자산"이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자산, 이러한 "저위험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 주 6) 편입비율, 최대손실가능비율 등은 집합투자계약, 투자설명서, 운용계획서 등을 기초로 하되, 실제 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 7)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분류하되, 환해지를 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는 1 등급씩 상향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채권의 경우 국제신용등급에 따라 위험등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 8) 모자형 자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모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을 기초로 하여 분류합니다.
- 주 9) 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10% 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 주 10) 파생상품의 편입비는 위험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 11) 파생상품 또는 증권의 차입 등을 통하여 위험노출 수준을 집합투자재산 순자산의 1 배수를 초과하여 운용하는 레버리지형 집합투자기구는 레버리지 수준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 주 12) 특정지수를 추정하는 인덱스 펀드의 경우 특정지수에 포함되는 종목수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 주 13)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의 경우 담보의 종류 및 담보비율, 보증인의 신용도 등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 주 14)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운용방법에 따라 별도로 분류합니다. 상기 분류에 따른 동일유형임에도 불구하고 편입자산의 구체적인 운용내용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별도로 위험등급을 달리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결산 3 년 경과 후 펀드 기준\_위험등급 기준표(예시)

등급	1(고위험)	2	3	4	5	6(저위험)
변동성(표준편차)	25%초과	25%이하	15%이하	10%이하	5%이하	0.5%이하

■ 투자자 성향별로 적합한 투자권유 대상 집합투자증권 등급

구분	매우높은위험 (1 등급)	높은위험 (2 등급)	다소높은위험 (3 등급)	보통위험 (4 등급)	낮은위험 (5 등급)	매우낮은위험 (6 등급)
안정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안정추구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위험수익중립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적극투자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공격투자형						

■ 투자일임계약 위험도 분류 기준

위험도	상품	내용
고위험	주식 1 형	선물/옵션, 압축 포트폴리오(15 종목 이하)
	글로벌형	해외 선물/옵션, 해외주식 및 해외재간접기구, 장외파생상품
중위험	주식 2 형	압축 포트폴리오(15 종목 이하)
위험	주식 3 형	Active 형(15 종목 초과 및 KOSDAQ 15% 이상 가능)
주의	주식 4 형	Active 형(15 종목 초과 및 KOSDAQ 15% 미만)